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58호
----------	-------

제출년월일 : 2004. 12.

제 출 자 : 김포시장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혁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자문 및 시정에 대한 새로운 시책도입과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로 기존에 구성된 미래발전위원회 기능에 지역혁신정책분과위원회를 추가 확대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

□ 주요골자

- 가. 혁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안제2조제4호)
- 나. 위원회 구성은 복지정책분과위원회등 4개분과위원회 외에 “지역혁신정책분과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추진 사항을 총괄 또는 자문하기 위한 고문을 신설함 (안 제3조제1항)
- 다. 고문 및 지역혁신정책분과위원회의 임무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 고문은 각 분과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추진사항이 원활히 진행 되도록 총괄 또는 자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각 분과위원장으로 부터 분과위원회 사무를 보고받을 수 있다(안 제4조제1항)
 - 지역혁신정책분과위원회는 혁신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추진 및 개혁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과·각급 행정기관과의 협력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1호)
- 라. 2002.11.30제정 조례 제410호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부칙 조항중 제2항 유효기간 “2004년 12월 31일까지”를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함

□ 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불입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상황 : 2005 예산 확보 추진(제1회 추경)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2004.11.15~11.30)결과 의견 1건 접수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혁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중 “위원회 구성은 복지정책분과위원회”를 “위원회 구성은 고문과 지역혁신정책분과위원회, 복지정책분과위원회”로 한다.

제4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고문은 각 분과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추진사항이 원활히 진행 되도록 총괄 또는 자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각 분과위원장으로 부터 분과위원회 사무를 보고받을 수 있다.

제4조(임무)중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혁신정책분과위원회는 혁신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추진 및 개혁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각급행정기관과의 협력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등

부칙 제2항중 “2004년 12월 31일까지”를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소	기획담당관실
입	실·과·소장	기획담당관
	성 명	홍 중 표
안	담 당	혁신분권담당
	성 명	채 지 인
자	담 당 자	권 영 진
	성명·전화	(행정 2156)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기능) (생략) 1.~3. (생략) <u><신설></u> 4. (생략)</p> <p>제3조 (구성) ①위원회 구성은 복지정책분과위원회, 친환경정책분과위원회, 교육문화정책분과위원회, 교통정책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별로 원활한 활동과 임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팀을 구성한다.</p> <p>제4조 (임무) <u><신설></u></p> <p><u>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u> <u><신설></u></p> <p>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p> <p>부칙(2002.11.30 조례 제410호)</p> <p>①(시행일) (생략)</p> <p>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u>2004년 12월 31일</u>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제2조 (기능)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u>4.혁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u> 5. (현행과 같음)</p> <p>제3조 (구성) ①위원회 구성은 <u>고문과 지역혁신정책분과위원회, 복지정책분과위원회</u> ----- ----- ----- -----</p> <p>제4조 (임무) ①<u>고문은 각 분과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추진사항이 원활히 진행 되도록 총괄 또는 자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각 분과위원장으로 부터 분과위원회 사무를 보고받을 수 있다.</u></p> <p>②<u>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u> <u>1.지역혁신정책분과위원회는 혁신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추진 및 개혁과제의 발굴에 관한사항, 중앙행정기관 · 각급 행정기관과의 협력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등</u></p> <p>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p> <p>부칙(2002.11.30 조례 제410호)</p> <p>①(시행일) (현행과 같음)</p> <p>②(유효기간) ----- <u>2007년 6월 30일</u>까지-----</p>

관계법령발췌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

[일부개정 2004.2.17 대통령령 제18284호]

제1조 (목적) 국정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혁신에 관한 사항과 지방분권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분권추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2.17>

제2조 (기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부조직의 정비, 행정기관간 기능조정,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행정운영시스템의 쇠퇴 등 행정개혁에 관한 사항
2. 인사행정시스템의 쇠퇴에 관한 사항
3. 재정·예산·조세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혁 및 정부출연·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방분권의 기본방향 설정 및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지방분권특별법 제9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분권추진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부혁신 또는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4.2.17]

제3조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2.17>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4.2.17>

1.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
- ③위원장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④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2.17>
-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통령비서실의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된다.
- ⑥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04.2.17>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전문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간사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①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1. 위원회·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등에 부의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위원회등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②사무기구의 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직하며, 위원장의 명

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자문위원)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 (추진단 및 업무혁신팀의 운영) ①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과제의 발굴, 추진상황의 관리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에 추진단을,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기관 및 국무총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업무혁신팀을 둘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등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위원회는 정부혁신 추진상황, 지방분권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사항과 지방분권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7>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 위원장 및 위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직원의 파견 등) ①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2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장, 위원회동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7956호,2003.4.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정부혁신추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8284호,2004.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신 : 김포시장(김봉식님)

참소 : 김포시 기획담당관(홍승표님)

발신 : 장동섭(동진 귀선 산65-6, 016-333-0811)

제목 : 자치법규 입법예고(김포시공고 제 2004-776호)

'축복의 땅, 살기좋은 김포'를 만들어가는데 의회에서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 11월 19일 등록원 자치법규 입법예고와 관련한 본인의 의견사항을 발송하고자 적어드립니다.

먼저 저의 의견은 반대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예고문의 2. 개정취지 내용 지방혁신정책분과 위원회를 추가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있다고 볼 수 있었지만 일부위원회의 일부 내용은 비례적합적이기보다 단시안적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사항인지 궁금함
3. 주요내용의 가 - 다 항은 업무의 효율성, 형평성에 의거 넘어 적용했어야 할 내용이며,

다 항은 위원회의 명칭과 사뭇 다른 비례지향적이시 못하는 위원회임을 지명하는 내용으로 식료된. 미처 유효기간이 도래 되기 전에 기간 연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엇보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또는 사업성과의 효율성 또는 기타 부과 위원회의 유지 및 낭위성이 제고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조래 안이라고 인식시켜주는 것 같이 느껴짐.

시민제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민들에게 그 동안의 격업, 성과를 공개한 후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편이 더욱 바람직한 절차라 사료되며 예산반영에 조점을 맞추려고 하는 처사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심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포시의 발전과 경안하시길 강권하시길 기원합니다.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558
----------	-----

제안년월일 : 2004년 12월 14일

제안자 :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위원장 신광식

1. 수정이유

-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고문직 신설이 김포시의 각종 위원회에 비하여 전례를 찾아 볼 수 없고 기존 4개 정책분과위원회의 운영사례를 보더라도 고문직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고문직 신설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3조 “고문과 ”를 삭제한다
- 안 제4조 제1항을 삭제한다.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 “고문과 ”를 삭제한다
- 안 제4조 제1항을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3조(구성)①위원회 구성은 복지정책분과위원회, 친환경정책분과위원회, ----- ----- -----</p> <p>제4조(임무)(신설)</p> <p><u>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u> (신설)</p> <p>1.(생략) 2.(생략) 3.(생략) 4.(생략)</p>	<p>제3조(구성)①위원회 구성은 <u>고문과 지역혁신정책분과위원회, 복지정책분과위원회, 친환경정책분과위원회</u>----- -----</p> <p>제4조(임무)①고문은 각 분과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추진사항이 원활히 진행 되도록 총괄 또는 자문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각 분과위원장으로부터 분과위원회 사무를 보고받을 수 있다.</p> <p>②(현행과 같음)</p> <p>1.<u>지역혁신정책분과위원회는 혁신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추진 및 개혁과제의 발굴에 관한사항, 중앙행정기관 각급 행정기관과의 협력업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등</u></p> <p>2.(현행제1호와 같음) 3.(현행제2호와 같음) 4.(현행제3호와 같음) 5.(현행제4호와 같음)</p>	<p>제3조(구성)①위원회 구성은 <u>지역혁신정책분과위원회, 복지정책분과위원회, 친환경정책분과위원회</u> ----- -----</p> <p>제4조(임무)①(삭제)</p> <p>②(개정안과 같음)</p> <p>1.(개정안과 같음)</p> <p>2.(개정안과 같음) 3.(개정안과 같음) 4.(개정안과 같음) 5.(개정안과 같음)</p>